

『가평군시설관리공단 바로마켓 가평점』

2026년 제 1회 전담 인력 채용 공고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기간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, 지역사회 발전과 공단의 가치 실현에 함께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6년 4월 03일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, 근무조건

업무	인원	채용기간	근무시간	급여 조건	비고
바로마켓 가평점* 운영 전반	1명	2026.5.06. ~ 2026.12.31.	09:00 ~ 18:00 (주5일,40시간)	- 월 급: 2,342,890원/(가평군 생활임금) - 기타 복지 1. 복지포인트 25,000원/월 2. 명절휴가비 500,000원(추석) - 기타 수당 및 휴가: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.	

※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, 휴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(조정)될 수 있음

■ 신분: 채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

■ 근무부서: 혁신기획팀(한석봉체육관 2층/자라섬 정원/가평휴게소 등)

■ 임금지급: 월급(월 1회, 익월 10일 이내 지급)

■ 기타사항: 4대 보험 가입,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수당 및 휴가 부여

※ 바로마켓 가평점* 이란?



‘바로마켓 가평점’은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장터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의 사업기준(연간 50일 이상, 회당 40농가 이상 참여)에 따라 지원 기간 내(최대 ~2029년)에 운영 됩니다.

2. 채용 응시자격

■ 응시 자격기준

구 분	자격기준
공통	<p>「아래 공통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령: 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~ 만60세 이하(면접시험 최종일 기준) - 거주지: 공고일 1일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 - 운전면허(2종 보통 이상) 소지자로서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사람 <p>※ 근무지 간 직접 이동 및 운영 물품 운반 등 현장 중심의 업무 특성 반영</p>

■ 결격 사유: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 11조(기간제 근로자의 자격)

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11조(기간제 근로자의 자격제한)
<p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3.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<p>지방공무원법(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제3호 관련)</p>
<p>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성년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<p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p> <p>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</p> <p>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</p> <p>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
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동점자 발생 시 우대 사항

자격사항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증 환자치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
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
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
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6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

- ※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※ 2가지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점수 1가지만 적용됩니다.
- ※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.

우대사항 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시 제출 필)

구 분	제출서류
취업지원대상자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원본제출, 보훈관청 발급)
장애인	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(원본제출, 시/군/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발급)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확인서(원본제출, 통일부 또는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다문화가족	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가지 (다문화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, 원본 제출)
의상자 및 의사·상자 배우자 및 자녀	본인- 의상자증명서, 배우자 및 자녀 - 의사·상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(원본 제출,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원본제출, 온라인 정부24, 오프라인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차상위 계층	차상위계층 확인서(원본제출, 온라인 복지포, 오프라인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
3. 채용일정(예정)

일자(기간)	추진내용	비고
2026.04.3.~04.17.	채용 공고(10일 이상)	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
2026.04.06.~04.17.	원서 접수(5일 이상)	방문 접수 또는 E-mail(1st8979@gpfmc.or.kr)
2026.04.21.(한)	서류심사(적격) 및 결과(면접일정 등) 발표	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
2026.04.24.(한)	면접심사	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회의실
2026.04.29.(한)	합격자 발표	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
2026. 05. 06.	근무시작	근로계약 체결 등

※ 추진일정은 공단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.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(제출 서류)

■ 채용공고

구분	내용
공고일자	□ 2026. 4. 03.(월). ~ 4. 17.(금) ※ 공고일 제외 10일간
공고매체	□ 가평군, 공단, 클린아이, 클린아이 잡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
공고내용	□ 채용예정 인원, 자격, 일정, 시험의 방법·시기·장소 등 채용전반 ※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 변경 시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

■ 원서 접수

구분	내용
접수기간	□ 2026. 4. 06.(월). ~ 4. 17.(금) / 09:00 ~ 18:00 ※ 토,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/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
접수방법	□ 방문접수 또는 E-mail(1st8979@gpfmc.or.kr) 접수
접수처	□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한석봉체육관 2층(혁신기획팀)
제출서류	□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 ○ 응시원서,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	□ 면접(당일) 시 구비 서류 ○ 응시표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(자격요건 중 거주지 확인용), 운전면허증 사본

※ 구비서류는 반드시 **공단 소정(채용공고) 양식을 다운로드**하여 작성

↳ 공단 홈페이지(www.gpfmc.or.kr) → 알림방 → 채용공고 → 2026년 제1회 바로마켓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5. 채용절차 및 방법

■ 채용절차

- 1) 1차 서류심사: 응시 자격 기준 부합 여부 심사(적격 여부)
 - 제출서류: 가점서류(해당자에 한함, 붙임 참조)
- 2) 2차 면접심사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- 3) 면접심사 평가항목: 100점 / 각 항목 당 20점 만점

평가항목	평가 점수	심사 기준					비고
		매우우수 (17~20)	우수 (13~16)	보통 (9~12)	미흡 (5~8)	매우미흡 (1~4)	
합계	100						
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	20						
창의성	20						
예의·품행 및 성실성	20						
문제파악 및 해결능력	20						
직무 전문성	20						

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**보통(60점)**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**미흡(8점)** 이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※ 동점자 발생 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(합격기준) 제3항에 따름

※ 주의사항: 블라인드 면접으로 응시자의 개인 신상 발언 금지(찬·인척 중 유명인사 또는 고위직,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, 가족관계, 학력, 사회경력 등 의도적 전달 행위)

■ 합격자 결정

구 분	내 용
발표일자	□ 2026. 04. 29.(수)
합격결정	□ 면접시험 결과(100% 반영, 동점자 발생 시 가산점 반영)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동점자 처리 기준	□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 제3항 기준에 따름 - 면접 평가항목 우선순위 순으로 비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- 선순위 면접 평가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, 차순위 면접 평가항목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결정
비 고	□ 채용 결과 발표 후 채용 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제도에 의한 추가 채용

■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

구 분	내 용
운영근거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의2(예비합격자 제도)
운영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속한 인원 보충 및 결원을 최소화
예비합격자 임용 결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차 순위 합격자부터 점수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고, 공단의 내·외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장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함.
유효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
예비합격 인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예정인원의 2배수(분야별 상위 2명)

합격자 발표: 공단 홈페이지(www.gpfmc.or.kr) 채용 공고 발표

※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: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
6. 고용의 해고

최종 합격 후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시행내규 제47조(고용의 해고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의 해고가 될 수 있음.

1.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
2. 출·퇴근 시간 및 근무태도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
3.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4.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
5.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(급)을 사칭한 때
6. 사회통념상 신체·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7. 공금의 횡령·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(금액의 제한은 없음)
8.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
9. 허가 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, 시위·집회 등에 참여한 때
10.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
11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
12.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
13.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 한 때
14.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
15.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
16.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
17.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
18.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때
19.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7. 기타 유의사항

- 인사청탁, 제출서류의 위변조,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후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·착오·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,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체 변경·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.
- 해당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,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합니다.(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90일까지 청구 기간이며 청구 시 14일 이내 반환됨. 비용발생 시 본인부담.) 또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우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친인척(배우자, 4촌이내 혈족·인척)인 합격 인원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.
- 본 공고 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- 기타문의: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혁신기획팀 바로마켓 담당자(☎031-8078-8084)